

## 모하비 공공 유틸리티 회사의 미납 관련 수도 공급 중단 정책

모하비 공공전력회사(이하 모하비)의 기타 정책, 규정, 법령이 있지만, 미납 관련 절수 정책에 대한 본 정책(이하 절수 정책)은 미납 관련 주거용 수도 공급 중단에 적용됩니다. 본 정책과 기타 정책 및 규정, 법령이 상충할 경우, 본 정책을 우선 적용합니다.

### **체납:**

청구서를 받은 후 모하비에서 공급하는 주거용 수도 요금을 모두 납부해야 하며, 청구서가 발송되고 20 일 이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체납됩니다. 비용이 체납된 후 납부하지 않은 금액에 10 달러의 연체료가 부과됩니다. 미납금과 연체료 부과 안내는 그 다음 달 수도 요금 청구서에 가산됩니다. 다음 달 요금이 청구되기 전 납부 방식 조정을 한 고객의 경우, 조정 조건에 따라 차후에 납부할 금액에 미납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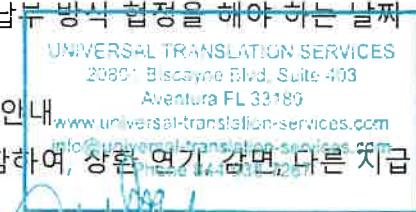
### **공급 중단:**

최소 60 일 동안 미납금이 체납되면 모하비는 주거용 수도 공급을 중단합니다. 주거용 수도 공급 중단에 앞서 다음과 같은 통지서를 받게 됩니다.

#### 1. 공급 중단 우편 통지서 (공급 중단 전 15 일/체납 후 45 일):

체납 45 일 이내에 수도 요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수도가 공급되는 고객의 주소로 통지서가 발송됩니다. 고객 주소가 실제 수도가 공급되는 주소와 다를 경우, 통지서는 가정용 수도가 공급되는 주소지뿐만 아니라 청구 주소지로 발송되며, "입주자" 앞으로 발송됩니다. 통지서에는 다음의 모든 정보가 기재되어 있지만, 지정된 것은 아닙니다.

- a. 고객의 이름과 주소
- b. 체납액
- c. 수도 공급 중단 막기 위해 요금을 납부하거나 납부 방식 협정을 해야 하는 날짜
- d. 체납액 납부 연장 절차 신청에 필요한 안내
- e. 청구서 관련 이의 제기 및 탄원 절차에 필요한 안내
- f. 체납된 주거용 수도 공급 관련 할부 상환을 포함하여, 상환 연기 갑면 다른 치급 방식을 요청하는 절차에 필요한 안내



- g. 모하비 서면 징수 정책 관련 전화번호와 웹사이트 링크 안내.
2. 공급 중단 48 시간 전 고지(유선 통보 혹은 중단 통지서를 문고리에 부착하여 고지):

단수 통지와 함께 모하비는 공급 중단 최소 48 시간 이전에 수도 공급 중단이 임박하였음을 알리는 공급 중단 통지서를 고지합니다. 본 공급 중단 48 시간 전 고지는 문고리 혹은 고객 기록에 있는 유선 번호로 고지되며, 정해진 날짜 이전에 납부되지 않을 경우, 수도 공급이 중단됨을 고객에서 통지합니다.

모하비가 유선으로 고객 혹은 거주지에 있는 성인과 연락이 안 될 경우, 거주지를 방문하거나, 눈에 잘 띠는 장소에 미납 관련 주거용 수도 공급 중단 임박 통지서와 미납 관련 주거용 수도 공급 중단 정책 통지서를 놓은 방식을 시행합니다.

모든 수도 체납액과 관련 비용은 공급 중단 48 시간 전 고지서에 기재된 날짜의 오후 4 시까지 모하비에 납부되어야 합니다. 공급 중단 48 시간 전 고지서에 기재된 기일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수도 공급이 중단되며, 체납 전액과 모든 재개 비용을 전액을 납부하거나 본 정책에 따른 다른 지급방식으로 납부할 때까지 수도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 대체 납부 방식:

정해진 납부 기한 내에 수도 공급 비용을 납부할 수 없는 고객은 연체료 혹은 수도 공급 중단을 막을 수 있는 대체 납부 방식을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모하비는 요청 관련 모든 상황을 고려하여 납부 방식 조정이 타당한지를 결정할 것입니다.

다음 청구 기한으로 연장된 납부 조정은 분할 상환 방식이며, 이는 반드시 서면을 통해 고객이 서명해야 합니다. 분할 상환 방식은 고객이 정한 기한 동안 체납액을 할부로 상환하며, 최초 고지서 발행일로부터 12 개월을 초과하지 않습니다. 분할 상환은 고객의 통상 고지서와 납부 기한이 동일하며, 분할 상환과 통상 고지서 요금이 부과됩니다. 고객은 분할 상환 약관을 준수하고, 매달 고지서 발행에 누적된 비용을 납부해야 합니다. 분할 상환 방식에 따라 체납액을 납부하는 동안 이후 미납되는 비용에 대해 추가로 분할 상환을 요청할 수 없습니다. 분할 상환 약관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공급 중단 통지서가 서면으로 발행됩니다. 공급 중단 통지서는 공급 중단 이전 영업일 5 일 이내로 거주지의 문고리 알림 방식으로 전달됩니다.



## 청구서 이의 제기 및 탄원:

청구서 혹은 계량기 측정에 이의가 제기된 경우, 계량기를 다시 측정합니다. 계량기의 정확성에 고객이 의문을 제기하는 경우, 고객이 모하비에 보증금 45 달러를 지불하고 계량기 등록 정밀 시험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고객이 정밀 시험 과정을 지켜볼 것을 권고합니다. 시험 결과 계량기의 정확성이 98% 이하일 경우, 계량기가 교체되며, 보증금 45 달러가 고객에게 반환되고, 최대 6 개월 이전까지 고지서의 납부액에 대해 비례 배분 조정액이 결정됩니다.

시험 결과 계량기의 정확성이 최소 98%일 경우, 계량기 정밀 시험에 든 모하비 비용에 대해 보증금 45 달러가 추징됩니다. 모하비가 고객에게 이의 제기 혹은 탄원에 대한 결정을 통지한 후, 고객은 모하비가 청구서에서 제하지 않은 모든 비용을 5 일 이내에 납부해야 합니다.

청구서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탄원서를 제출할 경우, 서면으로 공식 항의서를 제출해야 하며, 탄원 관련 정당한 사실과 이유를 정확하게 명시해야 합니다. 모든 서면 탄원은 아래 주소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모하비 공공 유ти리티 지구 (Mojave Public Utility District)

15844 K 스트리트

모하비, 캘리포니아 93501

(661) 824-4161

근무 시간 월요일 ~ 금요일 오전 7:30 – 11:45 및 오후 12:30 – 4:00

(공휴일 제외)

UNIVERSAL TRANSLATION SERVICES  
20801 Biscayne Blvd, Suite 403  
Aventura FL 33180  
[www.universal-translation-services.com](http://www.universal-translation-services.com)  
[info@universal-translation-services.com](mailto:info@universal-translation-services.com)  
Phone 844-938-7267

AHJ Huisman

## 수도 공급이 중단되지 않는 경우:

앞서 언급한 내용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모든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 모하비는 수도 공급을 중단하지 않습니다.

1. 고객 혹은 고객의 세입자가 가정용 수도 공급 중단이 생명을 위협하고, 건강과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1 차 의료기관임을 증명하거나, 주거 시설을 제공하는 주거 지역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한 경우.<sup>1</sup>
2. 고객이 모하비의 통상 고지서 발행주기 내에 주거 시설 비용을 지불할 경제적 능력이 없음을 증명한 경우. 만일 고객의 가족 구성원이 CalWORKs, CalFresh, 일반 생계 부조, Medi-Cal, 보족적 소득 보장/주 보조 지원금 혹은 캘리포니아 여성, 유아, 어린이 특별 보충 영양 프로그램의 현재 수혜자일 경우, 통상 고지서 발행주기 내에 주거 시설 비용을 지불할 경제적 능력이 없다고 간주하고, 고객의 가계 연 소득이 연방 저소득층 기준 200% 이하임을 신고한 경우.
3. 본 정책과 일치하는 분할 상환 방식, 대체 납부 방식, 혹은 납부 연기 및 감면에 고객이 기꺼이 동의한 경우.

3 가지 모든 조건이 충족된 경우, 고객은 12 개월 동안 체납액 분할 납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위에 언급된 3 가지 조건을 이행하는 부담은 고객의 책임입니다. 3 가지 조건을 해당하는 서류가 제출되면 모하비의 담당자가 서류를 검토하여 영업일 7 일 이내로 추가적인 정보 요청 및 수락, 거절 중 이행 결정을 내립니다.

담당자 혹은 대리인에 의해 본 정책의 가치 있고 적절한 예외가 때에 따라 발생합니다.

<sup>1</sup> "1 차 의료 기관"은 현재 Medi-Cal 프로그램에 등록된 (A) 모든 내과 전문의, 가정의, 산부인과의, 소아과의, 주의의, 의사 외 의료인, 1 차 의료 진료소, 농촌 진료소, 공동체 진료소, 외래진료소인데, 이는 Medi-Cal를 수혜자로 사례 관리를 제공할 것을 동의한 곳이며, 혹은 (B) A 호에 기재된 1 차 의료 제공자를 고용하거나, 계약했거나, 1 차 의료 제공자가 시술하는 정부 혹은 기타 정치 산하 부서이며, 본 조항 하에 계약된 목적으로 1 차 의료 제공자를 고용하는데 동의한 곳으로 복지 및 제도 규정 14088(b)(1)의 제 b 하위 조항의 제 1 항 A 호로 정의된다.

### **분할 상환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고객이 체납금에 대한 분할 상환 동의를 준수하지 못한 경우, 혹은 체납금에 대한 분할 상환 동의를 이행하는 동안, 고객이 60 일 이상 현재 사용 중인 가정용 공급 비용을 납부하지 않으면, 건물의 정확한 위치로 중단을 알리는 5 일 전 최종 고지를 우편 발송한 후 영업일 5 일 이후에 가정용 공급이 중단됩니다.

미납 관련 가정용 공급을 모하비가 중단한 경우, 모하비는 가정용 공급 재개 방법에 대한 정보를 고객에게 전달합니다.

### **공급 재개:**

본 정책의 상반되는 조항을 조건으로 규칙 위반이나 청구서 미납으로 공급이 중단된 경우, 모하비는 아래의 공급 재개 비용을 청구합니다.

공급 재개 비용 (정상 근무시간) \$50.00\*

공급 재개 비용 (근무시간 이후) \$150.00\*

\* 공급 재개 실제 비용이 위 금액 이하인 경우, 더 적은 금액이 청구되어 부과됩니다.

공급 재개 비용과 더불어 보증금을 납부한 기록이 없다면, 보증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모하비는 요청 당일 혹은 다음 근무일에 공급을 재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합니다. 공급 요청은 공급이 재개되길 원하는 날 오후 4 시 이전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오후 4 시 이후 신청된 요청은 다음 영업일에 처리됩니다.

모하비 직원 및 모하비의 허가 없이 수도를 공급한 경우, 수도 절도죄 명목으로 형사 소추뿐만 아니라 벌금 혹은 추가 요금 및 비용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허가받지 않고 공급을 재개하여 발생한 모든 피해는 고객 부담입니다.

UNIVERSAL TRANSLATION SERVICES  
20801 Biscayne Blvd, Suite 403  
Aventura FL 33180  
[www.universal-translation-services.com](http://www.universal-translation-services.com)  
[info@universal-translation-services.com](mailto:info@universal-translation-services.com)  
Phone 844-939-7267



## **반려 수표 비용:**

모하비 이용 요금 및 비용을 수표로 지불한 경우, 인출되는 즉시 수표로 결제하는 납부액이 은행에 의해 거절되어, 어떠한 이유가 있더라도 반려 수표를 처리한 금액, 현행 NSF 은행이 모하비에 부과한 은행 이용료, 10 달러의 반려 수표 비용이 고객에게 청구됩니다. 위 비용에 대한 청구는 현금 또는 보증된 편드로 납부해야 합니다.

## **미납 관련 공급 중단 후 요구되는 보증금:**

수도 공급이 재개되기 전 기타 해당 비용 및 요금과 더불어 보증금이 납입되지 않은 경우, 미납 관련 중단된 모든 공급에 관해 계량기 보증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공급 중단 재개에 대한 계량기 보증금액은 위에 기재된 공급 재개 비용과 동일합니다.

지난 12 개월 내 3 건 이상의 체납액이 있는 고객은 모하비의 수도 거래 및 공급 정책에 언급된 기한에 따라 보증금을 납부하고 유지해야 합니다. 계량기 보증금은 12 개월 동안 연속적으로 완납한 상태를 유지한 고객에게 반환됩니다. 고객은 매년 잠재적인 반환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급이 중단되었을 때 납부된 계량기 보증금은 최종 고지서에서 차감됩니다.

## **수도 절도:**

캘리포니아 형법 제 498 조, 624 조, 625 조에 국한된 것은 아니나 이를 포함하는 캘리포니아 법률은 다양한 방식의 수도 절도를 정의합니다. 수상한 수도 절도가 발견될 경우, 모하비 직원이 법률 기관에 의뢰합니다. 수도 절도는 기소될 수 있습니다.

추가적인 수도 공급을 예방하기 위해, 모하비는 계량기를 제거하거나 제어 장치를 설치하고, 비히가로 공급하는 장비 및 요소를 압류합니다. 사건과 관련된 인력, 요소 및 장비에 국한된 것은 아니나 이를 포함하는 신고된 사건과 관련되어 모하비가 청구하는 모든 비용과 합법적인 납부 없이 물을 보내는 목적으로 변경되거나, 파손되거나, 제거된 모하비 시설 및 기타 항목을 교체하고 수리하기 위해 모하비가 청구하는 모든 비용이 고객/개인에게 부과됩니다. 이 비용은 간접비 및 관리 비용의 15%가 부과 대상입니다. 모든 비용과 요금이 완납될 때까지 해당 주소에 수도 공급이 중단됩니다.

UNIVERSAL TRANSLATION SERVICES  
20801 Biscayne Blvd, Suite 403  
Aventura FL 33180  
[www.universal-translation-services.com](http://www.universal-translation-services.com)  
[info@universal-translation-services.com](mailto:info@universal-translation-services.com)  
Phone 844-938-7267

AHJ Huisma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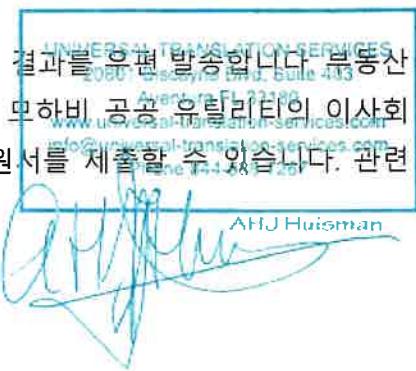
고객이 부정적인 수단으로 수도를 공급받았거나, 비허가 사용에 대해 수도 공급을 유용했다는 사실을 모하비에서 발견하면, 해당 고객의 수도 공급은 통지 없이 중단됩니다. 모하비의 규정과 요구 조건을 고객이 준수할 때까지 공급을 재개하지 않으며, 부정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발생한 모하비의 실제 비용 전액을 고객이 배상해야 합니다. 비허가 사용은 모하비 공급 지역 내에서 공급 연결, 모하비가 허가하지 않은 기타 구조물, 건물, 부지, 구획에 모하비의 수도를 공급하는 것으로 정의됩니다.

모하비가 비허가 수도 공급을 확인하면, 통지 없이 즉시 수도 공급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 또한, 비허가 공급이 시작된 구조물, 건물, 부지, 구획 기록상 소유주와 비허가 공급을 받은 사람(들) 모두에게 서면으로 통지합니다. 통지서에는 날짜가 기재되어 있으며, 부동산 주소, 위법 사항, 허가된 공급을 받기 위해 부동산 소유주 혹은 소유주의 대리인, 임차인이 취해야 할 조치 목록, 추가 정보를 요구할 수 있는 모하비 직원의 이름과 전화번호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통지서가 소유주에게 수도 공급이 중단된다는 사실을 알리고 해당 통지서를 무시할 경우, 모하비는 15 일 이내에 법적 조치를 통해 적합한 지원금을 받을 것이며, 수도 공급이 차단되지 않은 경우, 수도 공급이 차단됩니다. 해당 통지서는 모든 상점 및 사무실, 해당 지역에 있는 건물 입구에 부착될 것이며, 기록상 등록된 부동산 소유주에게 발송됩니다. 일단 수도 공급이 중단되면, 공급 재개가 필요하고, 위에 언급된 통지 사항과 원칙과 더불어 규정을 위반한 사항을 바로 잡고, 일반적인 사용 시작 요금 납부, 보증금 납부 혹은 재납부해야 합니다.

모하비로부터 비허가 공급 통지를 받은 경우 모하비 수도 시스템을 연결하는 관련 요금 및 비용을 포함하지만 한정되지 않은 비용을 지불하여 모하비의 현재 기준 규칙과 규정을 따르는 수도 공급을 연결할 때 공급 연결을 허가합니다. 모하비의 담당자는 본 정책의 기한 시작을 연장하는 권한을 갖습니다. 본 정책만을 목적으로 하여 현재 모하비의 기준을 따르기 위해 부당한 내부적 배관 작업을 해야 하는 상황이 포함된다면, 모하비의 재량에 따라 중앙 계량기를 해당 부동산에 설치할 수 있습니다. 비허가 공급이 일어난 시간에 대해 충분한 증거를 신청인이 제시해야 합니다.

비허가 공급 연결을 한 것으로 간주한 부동산 소유주가 직원의 평가에 이의를 제기한다면, 부동산 소유주는 이사회의 해당 위원회에 행정 심리 절차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행정 심리는 부동산 소유주의 요청일로부터 20 일 이내에 진행됩니다. 심리는 모하비의 부장 관리자인 심리 담당자가 주재합니다. 부동산 소유주는 심리에 변호인 혹은 기타 대리인과 동반할 수 있습니다. 심리 48 시간 이전에 심리 담당자에게 변호인 혹은 기타 대리인의 성명을 제공해야 합니다.

심리 담당자는 10 일 이내에 부동산 소유주에게 서면으로 심리 결과를 우편 발송합니다. 부동산 소유주가 심리 결과에 만족하지 않을 경우, 부동산 소유주는 문제를 모하비 공공 유틸리티의 이사회 안건으로 상정할 수 있습니다. 그 후 부동산 소유주는 이사회에 탄원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관련 문제에 대한 이사회의 판단이 최종 결정입니다.



수도 계량기와 부속품을 위조 및 변경, 개조, 재연결, 유용, 다른 비허가 및 부정 제어는 캘리포니아 형법에 위배됩니다. 특정한 이유로 수도 공급이 멈추거나 차단된 이후에 수도 공급관을 파손하거나 막거나, 수도의 흐름을 제어하는 배수 조리개 혹은 수도꼭지에서 수도를 유용하는 것 또한 캘리포니아 형법에 위배되며, 수도 절도의 의심이 있으면 모하비의 절차에 따라 처리됩니다.

모하비 소유 시설을 수리, 복원, 대체, 이전하는 상황을 유발하는 모든 위배는 시간과 요소에 따라 청구됩니다. 위배하여 청구된 금액을 미납하지 않으면, 공급 중단 및 회수 조치가 실행됩니다.

#### **소유주-세입자 상황:**

모하비는 분리된 단일 주거지, 다세대 주거 구조, 이동 주택지, 혹은 이주 노동 합숙소의 장기투숙 구조의 거주 중인 입주자에게 요금 별납이 되는 가정용 서비스를 개별적으로 공급하며, 거주지 및 구조물, 단지의 소유주, 관리인, 운영자가 고객 기록이고, 고객이 체납한 경우, 공급 중단 최소 10 일 이전에 공급 중단을 서면으로 거주지 입주자에게 통지합니다. 서면 통지서는 임대 계약 혹은 임대료 지급 증명을 통해 임차 증명을 제공하는 한 체납으로 인한 다른 비용을 지불하지 않아도 거주지 입주자가 공급에 대해 청구받을 수 있다는 권리에 대해 자세히 알려줍니다.

중앙 계량기가 있는 다세대 단지의 경우, 모든 거주지 입주자가 공급 약관 및 조건과 모하비의 규칙 및 규정, 법률의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않을 경우, 거주지 입주자에게 수도를 공급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한 명 이상의 해당 거주지 입주자가 차후 비용에 책임을지고 모하비에 배상할 용의가 있다면, 혹은 모하비의 규칙 및 규정의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않는 입주자에게 선별적으로 공급을 중단하는 법률적으로 가능한 물리적 수단이 있을 경우, 요구사항을 충족한 입주자에게 서비스를 공급합니다.

공급받기 전, 요금 별납 신청자는 신용을 쌓아야 하며, 다음 조건 중 하나를 통해 신용을 쌓은 것으로 간주합니다.

1. 본 정책에서 요구하듯이 수도 고지서 납부를 확실히 하기 위해 신청인이 현금 보증금을 내는 경우
2. 신청인이 이전 공급 과정에서 미납하지 않고 수도 비용을 지불하였고, 지난 12개월 동안 연속으로 모하비의 고객인 경우



분리된 단일 거주지의 경우, 모하비는 다음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1. 제안된 중단에 앞서 최소 7 일 이전에 중단을 통지합니다.
2. 포기한 연체 고객의 비용이 있는 경우, 입주자는 연체 고객 기록이 이전의 혹은 현재의 소유주, 관리인, 거주지 대리인이라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증명서는 임대 및 대여 계약서, 대여 영수증, 입주자가 해당 거주지를 대여한다는 정부 서류, 민법 제 1962 조에 따라 공개된 정보를 포함하나, 이에 제한되지 않습니다.

#### **공급 중단 신고:**

모하비는 모하비 이사회에 미납으로 인해 가정용 수도 공급이 중단된 연간 가구 수를 보고하며, 모하비의 웹사이트에 게시합니다.

#### **고객 질문 및 항의:**

본 정책 관련 질문이 있으시면 다음 주소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모하비 공공 유틸리티 지구 (Mojave Public Utility District)  
15844 K 스트리트  
모하비, 캘리포니아 93501  
(661) 824-4161  
근무 시간 월요일 ~ 금요일 오전 7:30 – 11:45 및 오후 12:30 – 4:00  
(공휴일 제외)

고객 명단 담당자는 고객의 고지서 관련 항의를 처리할 수 없는 경우, 상임 담당자에게 항의 제기해야 합니다. 상임 담당자가 고객의 항의를 처리할 수 없는 경우, 서면으로 항의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관련 문제에 대한 이사회의 판단이 최종 결정입니다.

UNIVERSAL TRANSLATION SERVICES  
20801 Biscayne Blvd, Suite 403  
Aventura FL 33180  
[www.universal-translation-services.com](http://www.universal-translation-services.com)  
[info@universal-translation-services.com](mailto:info@universal-translation-services.com)  
Phone 844-938-7267

